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776 |
|----------|-----|

2021. 7. 20.(화)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나. 발의일자: 2021년 6월 30일

다. 회부일자: 2021년 7월 2일

라. 상정일자: 2021년 7월 9일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원 의원)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집행기준(안 제4조)
- 사용제한(안 제5조)
- 사용내역 공개(안 제6조)
- 정보공개범위 등(안 제7조)
- 소속 직원 교육 및 점검(안 제8조)
- 충청북도의회 자료제출(안 제9조)
- 위반조치(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지출서류 작성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본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집행기준)** ①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관운영·정원가산·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할 것
2.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할 것
4.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5.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③ 제2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용제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인원수,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등)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육·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조치)**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 8. 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시행일 : 2021. 6. 23.] 제6조제5항

[시행일 : 2021. 12. 23.]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시행일 : 2021. 6. 23.] 제13조제5항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19.] [교육부령 제152호, 2018. 3. 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일시·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 12. 23., 일부개정]

### 별표 6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 1. 개 요

-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을 공개하며 대상 비목은 아래와 같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
    - \* 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
-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2. 공개방법 및 예시

### 2-1.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 기관장, 실국장, 지방의원의 경우

| 사용자 <sup>1)</sup> | 일시 <sup>2)</sup>    | 장소 <sup>3)</sup> | 집행목적 <sup>4)</sup>             | 대상<br>인원수 <sup>5)</sup> | 금액 <sup>6)</sup> | 결제<br>방법 <sup>7)</sup> | 비목 <sup>8)</sup> |
|-------------------|---------------------|------------------|--------------------------------|-------------------------|------------------|------------------------|------------------|
| 도지사               | 2020-05-03<br>12:40 | 한○촌              | 시·군 새마을 지도자<br>협의회장단 간담회       | 20                      | 200,000          | 신용<br>카드               | 기관               |
| 도지사               | 2020-05-05<br>12:55 | 김밥나라             | 지하철0호선 연장을 위한<br>전문가 간담회(철도협회) | 15                      | 150,000          | 신용<br>카드               | 시책               |
| 도지사               | 2020-05-10<br>17:00 | 집무실              | 결혼 축의금(김○○)                    | 1                       | 50,000           | 현금                     | 기관               |

#### ○ 부서의 경우

| 사용자 <sup>1)</sup> | 일시 <sup>2)</sup>    | 장소 <sup>3)</sup> | 집행목적 <sup>4)</sup>                    | 대상<br>인원수 <sup>5)</sup> | 금액 <sup>6)</sup> | 결제<br>방법 <sup>7)</sup> | 비목 <sup>8)</sup> |
|-------------------|---------------------|------------------|---------------------------------------|-------------------------|------------------|------------------------|------------------|
| 예산과장              | 2020-03-06<br>14:25 | 네○식당             | 지역사랑상품권사업<br>국회관계자 예산설명 간담<br>회       | 8                       | 40,000           | 신용<br>카드               | 시책               |
| 예산팀장              | 2020-03-15<br>15:23 | 세모카페             | 지역사랑상품권사업<br>예산확보를 위한 기재부<br>담당자와 간담회 | 5                       | 20,000           | 신용<br>카드               | 시책               |

- 1) 사용자 :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 또는 과장급이 장인 부서  
(부서의 사용내역은 부서장의 사용내역과 부서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 2) 일시 : 집행한 일자와 시간
- 3) 장소 : 집행한 장소
- 4) 집행목적 :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 등  
현금지급 시 집행대상 기재(개인정보에 유의)
- 5) 대상 인원수 : 사용자를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의 경우 지급 대상  
인원만 작성
- 6) 금액 : 원 단위로 작성
- 7) 결제방법 :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 지출 방법을 기재
- 8) 비목 : 집행한 비목 작성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회계직원책임법 )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